의안번호	제 214 호
의 결	2011년 9월 30일
연 월 일	(제 303 회)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9월 9일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14

발의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
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

최병윤·김양희·박종성 정지숙·유완백·최진섭의원

1. 개정이유

-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
- 충북문화재단 재산으로서 기금의 성격과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을 재산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 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법령의 추가
 - 「민법」제32조
 - →「민법」제32조 및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4조제2항

나. 제4조 신설

제4조에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민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관련부서 의견수렴 : 의견수렴 과정 거침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- 라. 예산조치 : 예산조치사항 없음.
- 마.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- 바. 부패영향평가 : 이견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충북문화재단은「민법」제32조 및「문화예술진 흥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 -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(이하 "재단"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제3조(등기)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4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- 1. 목적
 - 2. 명칭
 - 3. 사무소의 소재지
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
 - 6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
- 7. 이사 ·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8.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해산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5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 - 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
 - 2. 전통문화예술 계승·발전 사업
 - 3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
 - 4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사업
 - 5.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
 - 6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
 - 7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- 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7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.
- 제8조(기본기금의 조성 등)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한다.
 -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 - 1. 도ㆍ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
 - 2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

- 3. 개인·기관·단체의 출연금
- 4. 기금의 운영 수익금
- 5. 그 밖의 수입금
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,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9조(출연금 등)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- 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충북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11조(회계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- 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.
- 제14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,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가 지도·감독한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- 제15조(재단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.
 - 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
 - 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 - 3.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
- 제16조(준용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「민법」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